

제245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
검 토 보 고 서

서울특별시 금천구 학교 등의 급식에 방시능 등
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 지원에
관한 조례안
(교육지원과 소관)



행정재경위원회
전문위원

서울특별시 금천구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

1. 제안경위

가. 의안번호 : 제2392호

나. 제출자 : 이인식 의원, 정재동 의원, 도병두 의원

다. 제출일자 : 2023. 9. 5.

라. 회부일자 : 2023. 9. 5.

2. 제안이유

서울특별시 금천구 내에서 실시하는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한 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영유아 및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는데 기여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 및 제2조)

나. 구청장의 책무 및 정책수립(안 제3조 및 제4조)

다.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(안 제5조)

라.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(안 제6조)

마. 교육 및 홍보와 업무협조(안 제7조 및 안 제8조)

4. 관계법령

- 「학교급식법」 제3조
- 「식품안전기본법」 제4조
- 「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」 제3조
- 「영유아보육법」 제4조

5. 검토의견

① 제정 배경

- 본 조례안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¹⁾ 및 최근 오염수 해양 방류 논란에 따른 학교 등 급식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안전관리 필요성 증대에 따라 자치구 차원의 행정적, 재정적 지원과 안정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서울시 및 타 자치구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
 - 서울시교육청, 서울시 및 10개 자치구 제정 완료(2023.7.기준)
 - ※ 붙임1) 타 자치구 조례 제정 현황 참고
- 현재 서울시교육청, 서울시(서울친환경유통센터)에서 학교 급식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등 유해물질을 서울시 산하기관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 정기적으로 확대 검사하고 있음

② 주요 제정 내용

-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에 대하여 규정하고
-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한 용어로 “학교 등”과 “방사능 등 유해물질”에 대해 정의함.

1)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2011년 3월 11일 일본 동북부 미야기현에서 발생한 규모 9.0의 지진과 쓰나미로 인해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생한 원자력 사고임. 이 사고는 국제원자력기구(IAEA)의 사고평가척도(INES) 7등급으로 평가되어, 인류 역사상 최악의 원전 사고로 기록됨.

-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으로 “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”와 “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”라고 규정하고 있음.
- 안 제4조에서는 “구청장은 학교 등 급식시설에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검사체계 및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.”라고 규정함.
- 안 제5조에서는 구청장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와 검사에 따른 결과 공개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.
- 안 제6조에서는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시 구청장의 조치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
- 안 제7조에서는 학교 등의 급식 관련 종사자에 대한 교육 내용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는 것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
- 안 제8조에서는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.

3] 종합의견

- 최근 농수산물의 방사능 관련 불안감이 대두됨에 따라, 관내 영유아 및 학생급식의 안전 보장을 위한 조례의 제정 취지는 시의적절하고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

- 현 급식 식재료 검사체계에서 자치구 차원의 검사 진행시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 검사와의 중복 문제 및 자치구 표본검사에 대한 실효성 의문 제기에 대해서 다소 의견이 분분하므로 이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.

붙임 1. 자치구 조례 제정 현황 1부.

2. 관계법령 1부. 끝.

붙임 1

자치구 조례 제정 현황

연번	지 역 명	조 례 명	시행일자
1	서울특별시 교육청	서울특별시 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	2013.10.10
2	서울특별시	서울특별시 영유아시설 급식의 방사능 안전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	2019.12.31
3	동 대 문 구	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영유아 보육시설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	2013.12.12
4	구 로 구	서울특별시 구로구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	2014.07.17
5	중 구	서울특별시 중구 어린이집 급식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	2014.09.24
6	서 초 구	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린이집 급식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	2015.12.29
7	노 원 구	서울특별시 노원구 학교급식시설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	2015.04.23
8	강 남 구	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집 급식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	2018.03.05
9	성 동 구	서울특별시 성동구 급식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	2022.02.24
10	강 서 구	서울특별시 강서구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	2023.01.01
11	양 천 구	서울특별시 양천구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	2023.05.25
12	영 등 포 구	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	2023.07.06

※ [송파구] : 1) 방사능 안전급식 관련 주민조례(청구 서명 9,746명) 발의

2) '23. 5. 상임위 부결(반대 6, 찬성 1)

※ 부결사유 : 서울시 및 교육청의 학교급식 방사능 정밀검사체계 존재, 샘플검사는 전수조사가 아닌 이상 실효성 없음

[광진구] : 1) 방사능 안전급식 관련 주민조례(청구 서명 6,781명) 발의, 7.14. 의원발의 재상정

2) '23.4. 상임위 부결(반대 5, 기권 1) '23.7. 상임위 부결(찬성2, 반대4)

※ 부결사유 : 다른 자치구에도 조례는 있지만 실효성이 없고 예산낭비 요인 있음, ' 방사능 '이란 단어의 위압감으로 불안감 증폭

학교급식법

[시행 2022. 6. 29.] [법률 제18639호, 2021. 12. 28., 일부개정]

제3조(국가·지방자치단체의 임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·재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, 영양교육을 통한 학생의 올바른 식생활 관리능력 배양과 전통 식문화의 계승·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② 특별시·광역시·도·특별자치도의 교육감(이하 “교육감”이라 한다)은 매년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식품안전기본법

[시행 2022. 9. 11.] [법률 제18966호, 2022. 6. 10., 일부개정]

제4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산부터 소비까지 단계별로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정책(이하 “식품안전정책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. <개정 2022. 6. 10.>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식품안전정책을 수립·시행할 경우 과학적 합리성, 일관성, 투명성, 신속성 및 사전예방의 원칙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.

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식품등의 생산·제조·가공·조리·포장·보존 및 유통 등에 관한 기준과 식품등의 성분·구조·기능·안전 등에 관한 규격(이하 “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기준·규격”이라 한다)을 정함에 있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고려한 과학적 기준을 세워야 하며, 「세계 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」에 따른 국제식품규격위원회의 식품규격 등 국제적

기준과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한다. <개정 2011. 8. 4.>

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복적인 출입·수거·검사 등으로 인하여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

[시행 2023. 8. 8.] [법률 제19622호, 2023. 8. 8., 일부개정]

제3조(국가 등의 책무) ① 국가는 어린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어린이에게 제공되는 식품의 안전과 영양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에게 제공되는 식품의 안전과 영양수준의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할 때 과학적 합리성, 일관성, 투명성, 신속성 및 사전예방의 원칙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.

③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·가공, 조리 또는 진열·판매하는 자와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자는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하고 영양가 있는 식품을 공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영유아보육법

[시행 2023. 8. 8.] [법률 제19606호, 2023. 8. 8., 일부개정]

제4조(책임) ① 모든 국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,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 1. 23.>

③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어린이집을 확

보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. 6. 7., 2011. 8. 4., 2020. 12. 29.>

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육교직원의 양성, 근로여건 개선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 <신설 2015. 5. 18., 2020. 12. 29.>

[전문개정 2007. 10. 17.]